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June 2, 2021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내용
I. 보도자료	
<u>건설업분야 대상 부당 특약 직권조사 실시</u> 5. 3.	• (이슈) 건설업분야 대상 부당 특약 직권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는 5. 3. 부터 서면실태조사에서 위반 혐의 및 제보가 있었던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 등에 대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 실시
<u>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u> 5. 4.	• (이슈)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u>인앱결제 관련 토론회 개최</u> 5. 6.	• (이슈) 인앱결제 관련 토론회 • (주요내용) 공정위는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글 인앱결제의 문제점, 경쟁법상 쟁점, 데이터 이슈 등에 대하여 논의
<u>대기업집단 시책 설명회 개최</u> 5. 7	• (이슈)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이슈	주요내용
‘지난해 공정위 사건처리 실적 20년만에 최저’ 기사 관련 해명 5. 9.	• (이슈)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감소 • (주요내용) 공정위는 최근 사건처리 건수 감소 이유를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 연성규범 확대 등에 따른 거래관행 개선,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고, 2020년 접수 사건과 처리 사건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
‘공정경제’ 추진에 따른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발표 5. 11.	• (이슈) 공정경제 정책 성과 및 추진 방향 • (주요내용) 지난 4년간의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대기업에 대한 공정경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공정경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 및 일정 발표 5. 12.	• (이슈)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 및 지원요건 발표 • (주요내용)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의 지원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 개편방안 및 일정을 발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5. 17.	• (이슈)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5. 17. 부터 2021. 6. 7. 까지 행정예고
개정 사건절차 규칙, 동의의결 규칙 시행 5. 20.	• (이슈) 개정 사건절차 규칙, 동의의결 규칙 시행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 20.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5. 25.	• (이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 및 시행 • (주요내용) 공정위는 (i)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연장, (ii) 렌탈 서비스, 결혼중개업 분야의 위약금 관련 규정 개선, (iii) 신유형 상품권 추가대금 수취 방지 규정 신설, (iv) 상조업 환급금 산정기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021. 5. 25.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
2021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5. 26.	• (이슈)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주요내용)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i) 5개사가 신규 등록하였고, (ii) 4개사가 폐업하였으며, (iii) 4개사가 상호 변경, 16개사가 주소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2021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

이슈	주요내용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건 승인 5. 27.	• (이슈)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건 승인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1. 5. 26. (i)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 양수 건 및 (ii)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
II. 주요 소식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 관련 세미나 개최 5. 3.	• (이슈)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 • (주요내용)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 관련 세미나에서 공정위 관계자가 맞춤형 광고의 (i) 규제 배경, (ii) 규제 방향, (iii)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신설 예정 5. 4.	• (이슈)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신설 • (주요내용) 공정위는 6. 1.부터 카르텔조사국 내에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이 실시한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중점 감시할 계획(관수입찰은 종전과 같이 입찰담합조사과에서 담당)
EU 집행위원회, 역외국가 보조금 규제에 관한 새 규정 제안 5. 5.	• (이슈) EU 집행위원회의 규제 동향 • (주요내용) EU 집행위원회는 EU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에 대한 역외국가(비 EU국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입찰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규 규정을 제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강연 참석 5. 6.	• (이슈) 공정위 정책 동향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장은 ‘헤럴드경제 특별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하여 디지털 공정경제,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 벤처투자 촉진 등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소개
공정위,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등에 대한 입장 표명 5. 11.	• (이슈) 공정위 정책 추진 방향 소개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i)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 확정, (ii) 동일인 지정제도 보완, (iii) 대기업집단 규제, (iv)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개보위 권고, (v) 온라인플랫폼 규제, (vi) 앱마켓 데이터 독점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
공정위, 지방사무소 조직 개편 착수 5. 11.	• (이슈) 지방사무소 조직개편 착수 • (주요내용) 공정위는 서울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사무소 조직개편에 착수

이슈	주요내용
SNS 뒷광고·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발언 5. 12.	• (이슈) SNS 뒷광고 및 라이브 커머스 규제 • (주요내용)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SNS 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으며, ‘라이브 커머스’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고 밝힘
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불공정약관’ 현장조사 5. 13.	• (이슈)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약관 현장조사 •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난달 말 가상화폐 거래소 10여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약관 여부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과장, ‘소비자 중심 ESG 좋은 기업 만들기 의미와 과제’ 포럼 참석 5. 13.	• (이슈) ESG 경영 관련 포럼 참석 • (주요내용) ‘소비자 중심 ESG 좋은 기업 만들기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공정위 관계자는 (i) ESG가 보여주기식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고, (ii) ESG에 지나치게 다양한 요소가 고려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 친화적인 지표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국회 입법조사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보고서 출간 5. 14.	• (이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동향 • (주요내용) 국회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방안, 규제 주무부처에 대한 논쟁을 담은 연구보고서 출간
공정위, 보증시장 독과점 완화 방안 모색 5. 19.	• (이슈) 보증시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개선 연구 착수 • (주요내용) 공정위는 보증시장 독과점에 따른 진입 장벽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증시장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보증시장 현황의 분석과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함
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 사항 등 규제사무 일몰심사 5. 24.	• (이슈) 하도급법 시행령 및 기타 공정위 소관 고시 관련 규제 일몰심사 • (주요내용) 공정위는 5. 24. 하도급법 시행령 2개 조항 및 기타 공정위 소관 고시 7개 조항을 규제사무 일몰심사 대상으로 정하여, 6. 7. 까지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의견 등을 접수한다고 밝힘
경총,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5. 26.	• (이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 동향 • (주요내용) 경총은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실태조사 규정, 예방적 금지 청구권 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힘

이슈	주요내용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적용 관련 업계 우려 5. 28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적용 관련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입장 • (주요내용) 공정위가 판매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도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세미나 개최 5. 28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규율범위 관련 세미나 개최 • (주요내용)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5. 28.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전자상거래법상 규율범위의 적절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공정위도 참석하여, (i) 규율대상인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 (ii) 개인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iii) 소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규율 수준, (iv) 개인간 거래에서의 플랫폼 책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
III. 국회 발의법안	
<u>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정부안) 국회제출</u> 5. 3.	• (이슈)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부는 (i)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 가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ii)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iii)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iv)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u>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국회제출</u> 5. 25.	• (이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전재수 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을 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u> 5. 28.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송재호 의원이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공정거래 소식

I. 보도자료

1. 건설업분야 대상 부당특약 직권조사 실시 (5. 3.)

- 공정위는 2021. 5. 3. 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실시
 - **(배경)**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아졌음
 - **(조사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가 있었던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
 - **(조사 내용)**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할 계획
-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

2.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5. 4.)

- 공정위는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사업자 대표 및 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를 개최. 기계업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협약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는 (i) 기술지원·보호 방안 확대, (ii) 금융지원 확대, (iii) 금형 거래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i) 하위 업체 상생지원, (ii)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대금 조정 시 필요정보 제공, (iii)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등을 실천
- 업계는 (i)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ii)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iii) 공정거래협약 모범업체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
- 공정위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보다 적극적인 기술지원 및 보호를 위해 협약평가 기준 상 해당 부문 점수를 높일 것이라고 밝힘. 또한, 대금 분쟁조정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유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3. 인앱결제 관련 토론회 개최 (5. 6.)

- 공정위는 고려대 ICR센터와 함께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김종민 국민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 등이 인앱결제와 관련된 경쟁법상 쟁점, 데이터 이슈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
- 공정위 관계자는 (i) 관련시장을 모바일 OS 시장, 앱마켓 시장, 인앱결제 시장으로 분석한 내용 및 (ii) 해당 이슈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개념을 차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iii) 인앱결제를 통해 데이터를 독점하여 맞춤형 광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

4.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5. 7.)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
-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i)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ii)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 금지, (iii)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iv) 순환출자 규제, (v)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vi) 국외계열사 공시, (v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viii) 벤처지주회사 특례, (ix)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앞으로 시행령 등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기업 측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힘

5. ‘지난해 공정위 사건처리 실적 20년 만에 최저’ 기사 관련 해명 (5. 9.)

- 2020년 공정위 제재건수가 20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i) 공정위 접수 사건과 처리 사건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 연성규범 확대 등에 따른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가맹,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2019년부터 지자체로 이양) 등에 따른 결과이고, (ii) 2020년 접수 사건과 처리 사건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

6. ‘공정경제’ 추진에 따른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발표 (5. 11.)

- 공정위는 지난 4년간의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대기업에 대한 공정경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공정경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관련 공정경제 추진 성과**

-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 (i) 하도급 직불제 확대, (ii)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 지급 보장, (iii) 대금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
-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i)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도록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ii) 기술융합 감시 전담부서 신설하는 등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제도 보완, (iii)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
-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 강화)** (i) 공정거래협약 확산, (ii) 국적선사의 중소기업 수출화물 운송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 강화

• **소상공인 관련 공정경제 추진 성과**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i) 코로나 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ii) 결제수수료 감면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도입, (iii)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iv)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 보강)** (i) 장기가맹점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마련, (ii) 가맹점 중도폐업시 위약금 면제, (iii)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주요 거래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협상력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를 보강
- **(피해구제 강화 및 상생협력 확산 지원)** (i)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확산 지원, (ii) 유통분야 판촉행사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iii) 분쟁조정 담당기관 확대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확산 지원

• **취약계층 노동자 관련 공정경제 추진 성과**

- (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ii) 임금 직불제 시행을 통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해소, (iii)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iv)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 (v) 공정임금 확산을 위한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및 활용 매뉴얼 개발·보급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소비자 관련 공정경제 추진 성과**

- (i)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고, (ii)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정비하였으며, (iii)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취약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 **대기업 관련 공정경제 추진 성과**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i) 주식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전자증권제와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용이하게 하는 전자투표제 확산, (ii) 공정경제 3법(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정거래법) 시행, (iii)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한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대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 개선)** (i) 순환출자고리 및 채무보증금액 해소, (ii) 일감 개방 등을 통한 독립·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 (iii) 법·제도 개선을 통한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이끌어 내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함

• **향후 공정경제 정책 추진 방향**

- (i)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ii) 택시기사·배달라이더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iii)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밝힘

7.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 및 일정 발표 (5. 12.)**

- 공정위는 (i)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ii)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
 - **(사업 내용)**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 지원하는 가맹본부에게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0.2%p ~ 0.6%p) 및 보증료율(0.2%p)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

- **(추진 경과)** 작년 270개 가맹본부가 사업에 참여하여, 약 3.7만 가맹점주에게 총 260억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졌고, 가맹본부도 금리 및 보증료를 인하 혜택을 받음
- **(결격사유 도입)**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선정 요건 확대)**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함

구분	연번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지원 자격 (①~⑦ 중 하나 충족)
자금 지원 (기존)	①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 로열티 1개월 이상 면제
	②	필수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③	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④	매출 감소 등 점주 손실분 2개월 간 20% 이상 지원
	⑤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지원 (상기 1~4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수준의 현금 지원)
상생 협력 (신설)	⑥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발생 시 내부자율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⑦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i>*가맹본부-점주 간 모범적인 상생모형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i>

- 공정위는 6월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업공고를 하고, 9월경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2월경 착한프랜차이즈를 선정할 예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도 실시하여, 사회통념상 착한프랜차이즈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등 부적격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 법을 위반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음

8.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5. 17.)

- 공정위는 (i)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위법성 판단의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ii)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6. 7. 까지 행정예고

[주요 개정 내용]

•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반품조건’에 대하여,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

-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하여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

-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 보완**

-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 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따라서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 목적도 함께 고려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정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명자의 실제 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9. 개정 사건절차 규칙, 동의의결 규칙 시행 (5. 20.)

- 공정위는 2020. 5. 19.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 5. 20.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사건절차 규칙 개정 내용**

- **(처분 시효의 기산일인 ‘조사개시일’ 정의,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공정거래법 및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 직권 조사 사건의 경우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

-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명확화, 제29조 제12항, 제29조의2)**

위원회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규정.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통지 의무 구체화, 제53조의2 제5항 및 제6항)**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 예외를 인정

-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 행위 제한, 제29조 제18항)**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

- (전원회의·소회의 진술 시간 합리화, 제40조 제2항)

전원회의·소회의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전원회의·소회의 참석자 범위 합리화, 제34조 제1항)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직원(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제외)이 심사관을 보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 진술 가능

- (사건 착수 사실 통지 대상 및 통지 방법 확대, 제11조 제4항)

사건 착수 사실 통지 대상을 피조사인 뿐만 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하고, 통지 방법도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 동의를결 규칙 개정 내용

-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 및 위탁대상 업무 규정, 제14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점검·자료 제출 요청 등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이행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

-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 제14조의3)

공정위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제14조의4)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

- (수탁기관의 이행 관리 현황 보고, 제14조의5)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공정위에 위탁받은 동의를결에 대한 이행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동의를결 받은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불이행하면 그 즉시 해당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

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 및 시행 (5. 25.)

- 공정위는 (i) 내비게이션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에 한함)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연장, (ii) 렌탈서비스, 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 개선, (iii) 신유형 상품권 추가대금 수취 방지 규정 신설 및 (iv) 상조업 환급금 산정기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021. 5. 25.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주요 개정 내용]

• 비포마켓 내비게이션 관련 개정 내용

- 현재 비포마켓 및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은 모두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되어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 2년, 부품보유기간 8년으로 연장

• 렌탈서비스업 관련 개정 내용

-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 기준
 - (i) 정기관리가 안되는 지역 또는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ii) 해외이주: 관련 자료 제출 및 위약금 50% 감면
- 중도해지시 위약금에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비용 기준
 - (i)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음
 - (ii)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면제·할인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 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

• 결혼중개업 관련 개정 내용

- 종전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던 것에서 (i) 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제공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0% (ii) 정보(프로필)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5% (iii)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시 가입비의 20%로 위약금율을 단계별 세분화하여 규정

• 신유형 상품권* 관련 개정 내용

-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기프트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추가대금을 실제로 수취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 신설

*지류형 상품권과 대비되는 전자적 형태(전자형·모바일·온라인)의 상품권

• 상조업 관련 개정 내용

-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금 환급금 산정기준을 현행 고시 규정*에 맞게 상세한 계산식으로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11. 2021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5. 26.)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i) 5개사가 신규 등록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ii) 4개사가 폐업하였으며, (iii) 4개사가 상호 변경, 16개사가 주소 변경, 2개사가 전화번호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2021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이에 따라 2021년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6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함

12.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건 승인 (5. 27.)

- 공정위는 2021. 5. 26. (i)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 건 및 (ii)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건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
 -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건은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는 하나,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 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II. 주요 소식

1.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 관련 세미나 (5. 3.)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주최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가천대 최경진 교수,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 서울대 나종연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의 현황,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
- 공정위 관계자는 맞춤형 광고의 (i) 규제 배경, (ii) 규제 방향, (iii)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내 관련 규제 등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

[주요 내용]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규제 배경)** (i) 소비자들은 맞춤형 광고가 상황과 시기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관심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고, (ii) 일반광고인지 맞춤형 광고인지 식별이 어려우며, (iii) 많은 맞춤형 광고들이 소비자들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방식(Opt-in)이 아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후에 광고를 차단하는 방식(Opt-out)을 취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됨. 또한 (iv) 사전 동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소비자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고, (v) 맞춤형 광고 차단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며, (iv) 아이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합리적인 구매에 대한 판단이 미흡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규제 방향)**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광고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하고자 함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내 관련 규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i)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ii)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개정안 제18조 제3항)
 - 맞춤형 광고의 고지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전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별도 고시를 통해 규율할 예정
 - 표시광고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i) 전상법 개정안은 맞춤형 광고의 방식을 규율하고, 표시광고법은 맞춤형 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 (ii) 개정안 제4조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시·광고의 경우 전상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예정

2.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신설 (5. 4.)

- 공정위는 6. 1. 카르텔조사국 내에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이 실시한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중점 감시할 계획
 - **(배경)** 현재 공정위가 처리하는 담합 사건 중 입찰담합 유형의 비중이 70%에 달하고, 민간 발주 입찰담합 사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입찰담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소속 입찰담합조사과 한 곳 뿐이어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정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6. 1. 부터 가동

3. EU 집행위원회, 역외국가 보조금 규제에 관한 신규 규정 제안 (5. 5.)

- EU 집행위원회는 EU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에 대한 역외국가(비EU국가)의 보조금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와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정을 제안
-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i) 5천만 유로(약 677억 원) 이상의 역외정부의 보조금과 관련된 연 매출 5억 유로 이상의 EU기업 인수합병 및 (ii) 역외국가 보조금이 관여된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 조달 계약 입찰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사업체 일부를 매각하거나 최대 매출액 10%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EU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4.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강연 참석 (5. 6.)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매체 조찬 강연에 참석하여 디지털 공정경제,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 벤처투자 촉진 등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소개
-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i) 계약서 점검 및 표준계약서 보급, (ii)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의해 피해받는 가맹점 및 대리점 구제, (iii)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추진, (iv) 거대 ICT 기업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독점 집중감시, (v)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추진 등을 특히 목표로 한다고 언급
-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과 관련하여서는, (i)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및 지주회사 신규 전환시 자·손회사의 무지분율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기업집단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ii) 부당 내부거래 근절, (iii) 시스템통합(SI)업종에 대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 마련 등을 소개
- 벤처투자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i)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완화(5,000억 원→300억 원), (ii) 벤처지주회사 설립 시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년→10년)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5. 공정위,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등에 대한 입장 표명 (5. 11.)

- 공정위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i)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 확정, (ii) 동일인 지정제도 보완, (iii) 대기업집단 규제, (iv)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추진과정에서의 개보위 권고, (v) 온라인플랫폼 규제, (vi) 앱마켓 데이터 독점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
-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 확정과 관련하여, 기업집단국 내에 지주회사과를 제외한 기업집단정책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가 정규조직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힘

- 동일인 지정제도 보완과 관련하여, 내·외국인 차별 없이 대기업집단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동일인 지정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동일인의 정의나 요건을 구체화하고, 외국인의 형사 제재 가능 여부와 친족 범위 등의 개선에 관한 용역발주 계획)
-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 IT기업도 전통적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신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어려움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보위 권고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개보위의 권고와 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표명
-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소비자를 보호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약서 교부, 필수기재사항 포함, 계약 중단·해지·종료 사전 고지 등 필요한 규제만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앱마켓 데이터 독점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앱마켓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앱마켓 관련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디지털 광고 시장 분야의 연구용역도 추진하여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맞춤 광고에 대한 데이터 독점 이슈에 관하여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

6. 공정위, 지방사무소 조직개편 착수 (5. 11.)

- 공정위는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시작하여 지방사무소 조직개편에 착수
 - **(개편 배경)** 1990년 지방사무소 개소 당시와 비교해도 인력 증원이 거의 없어 현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실제로 사건 처리 지연 사례가 늘고 있음

7. SNS 뒷광고·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5. 12.)

- 공정위 관계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SNS 뒷광고·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입장 표명
 - ‘SNS 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갈 계획
 - ‘라이브 커머스’는 비대면으로 전자적 수단을 동원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6조의 거래기록보존의무가 적용되어 영상기록 등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고 언급

8. 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의 불공정약관 관련 현장조사 (5. 13.)

- 공정위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스템 오류·장애로 매매가 지연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0여 곳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조사(조사결과는 하반기에 공개)
 - 공정위는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일부 업체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에 주목하여 조사를 진행
 - 2017년에도 5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였는데 당시 수정된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
-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불공정 약관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거래소 사업자를 찾아가 해당 약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청취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9. 공정위, ‘소비자 중심 ESG 좋은 기업 만들기 의미와 과제’ 포럼 참석 (5. 13.)

- ‘제28차 소비자권익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소비자 중심 ESG 좋은 기업 만들기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고, ESG와 소비자의 접점을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공정위 관계자는 ESG와 관련하여 보여주기식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또한 ESG에 지나치게 다양한 요소가 고려됨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 친화적인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ESG와 관련한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으나 공정위와 협업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ESG와 관련한 지표가 만들어진다면 현행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10. 국회 입법조사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연구보고서 출간 (5. 14.)

-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i)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특성, (ii) 입법 필요성, (iii) 주요국의 관련 입법례 소개 및 (iv)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의 비교·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링크](#))를 출간하였고, 14일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주무부처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는 연구보고서([링크](#))를 출간

11. 공정위, 보증시장 독과점 완화 방안 모색 (5. 19.)

- 공정위는 보증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진입 장벽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증시장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
- 보증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하여 80여개 주체들이 보증사업을 하고 있으나 세부 시장별로 독과점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공정위는 보증산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시장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증과 금융보증, 개인보증 시장은 여전히 독과점이라고 지적하면서, (i) 국내 보증시장의 현황·규제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ii) 특정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보증보험 시장 경쟁체제 도입할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12. 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 사항 등 규제사무 일몰심사 (5. 24.)

- 공정위는 5. 24. 하도급법 시행령 2개 조항 및 기타 공정위 소관 고시 7개 조항을 규제사무 일몰심사* 대상으로 정하여, 6. 7.까지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의견 등을 접수한다고 밝힘. 일몰심사 대상 조항은 아래와 같음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이 설정된 규제들에 대해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하는 심사

- (시행령 2개 조항 관련) (i)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ii)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금 조정협의 요건 확대 필요성
- (고시 7개 조항 관련) (i)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에 따른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ii)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iii)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전체, (iv)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체, (v)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

연이율 고시 중 선급금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현재 연 20%), (vi)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중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시 지연이율 (현재 연 15.5%), (vii)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중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3. 경총,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5. 26.)

- 공정위는 4. 12. (i) 소비자권익 증진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련 시장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6조), (ii)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고,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0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이에 대해 경총은 5. 26. 반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힘
 - **(실태조사 규정)** 공정위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실태조사 제도를 신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제기
 - **(예방적 금지청구권 규정)**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 예상’만으로 소송이 가능한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고 소송 필요성을 사전점검하는 허가 절차를 없애면 기획소송 등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송 제기 요건 완화보다 현행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어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

14.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적용 관련 업계 우려 (5. 28.)

-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재화뿐 아니라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적용하기로 하였음. 따라서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도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제29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만약 사업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는 소비자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 발생
- 현재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대리운전 기사의 성명은 이용자에게 공개하되 연락처는 안심번호로 전환해 제공 중임.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플랫폼은 택시기사와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기사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까지 제공해야 함. 공정위는 개인정보위원회 권고에 따라 최종 개정안에서 주소는 제외하기로 했으나, 성명·전화번호 외에도 '필수 확인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우려가 계속됨.
-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재화·용역 등 모든 거래에는 신원 확인이 필수라는 입장

15.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세미나 개최 (5. 28.)

-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5. 28.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전자상거래법 상 규율범위의 적절성’이라는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
- 공정위 관계자는 (i) 규율대상인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 (ii) 개인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iii) 소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규율 수준, (iv) 개인간 거래에서의 플랫폼 책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

III. 국회 발의법안

1.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국회제출 (5. 3.)

- 5월 3일 정부는 (i)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ii)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iii)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iv)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국회제출 (5. 25.)

- 5월 25일 국회 정무위 전재수 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지난 2021. 3. 5.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전재수 의원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정의 규정:** 공정위안은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다시 거래방식 및 관여도에 따라 ① 정보매개, ② 연결수단 제공, ③ 거래중개 플랫폼으로 추가 구분하였으나, 전재수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①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서비스”, ② 연결수단 제공, ③ 거래중개 플랫폼으로 구분
- **유료전환 상품:** 전재수 의원안에서는 일정기간 무료 사용 후 유료로 전환되는 서비스에 대해 유료전환 시점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고지 또는 통지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
-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 공정위안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 하면서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전재수 의원안은 사전 고지 의무는 그대로 규정하되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중요업무 수행 연대책임:** 공정위안 제25조 제4항에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중요 업무 수행 관련 손해에 대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전재수 의원안에서는 별도 조항(제26조)으로 분리하고 연대책임 표현을 삭제하여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자기책임임을 명확히 함
- **C2C 거래 소비자 보호:** 공정위안은 C2C분쟁 발생시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전재수 의원안에서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하도록 규정
-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정위안은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전재수 의원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3.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 (5. 28.)

- 국회 정무위 송재호 의원은 (i)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안 제3조의4 제1항 후단 신설), (ii)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며(안 제3조의5 신설), (iii)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항목을 통합하거나 발주량을 축소한 내역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추가하고(안 제4조제2항제9호 · 제10호 신설), (iv)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그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안 제14조제6항 신설), (v)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안 제35조제2항)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